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처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,
-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 권장규정을 신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및 추가품목 신설(안 제6조, 별표 1)

품 명	규 격	수 수수료	비 고
폐 소 화 기	15kg 이상	7,000	상위법 개정에 따른 항목추가
	7kg ~ 15kg	5,000	
	3.3kg 이상	3,000	
	3.3kg 미만	2,000	
침대(돌, 옥, 황토)	2인용	30,000	품 목 신 설
	1인용	20,000	
안마의자	모든규격	20,000	
카시트	모든규격	3,000	
여행용가방	모든규격	2,000	
비데	모든규격	3,000	
타이어	림외경 19인치 이상	5,000	
	림외경 19인치 미만	3,000	

○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(안 제6조, 별표 1)

종별	품명	규격	수수료(원)	비고
공사장 생활폐기물		100kg 이하	7,800	
		100kg 초과 100kg 마다	7,800 추가	
		5톤 미만	390,000	

○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,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생활
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의2)

○ 종량제 봉투 규격 정비(안 제15조, 별지 서식)

구분	음식물쓰레기봉투		불연성(매립용)마대	
	현행	개정	현행	개정
규격	3ℓ, 10ℓ, 20ℓ	20ℓ	20ℓ, 30ℓ	10ℓ

- 현재 사용되지 않는 종량제 봉투 규격 삭제
- 본래 취지에 맞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만
사용토록 불연성마대 용량 축소

○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관리원으로 변경(안 제16조)

- 구미시청노동조합 단체 협약

○ 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 마련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종합허가과와 합의되었음.

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처리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,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및 다세대·다가구 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권장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공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고,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다세대·다가구 주택에 재활용품 분리·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